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11. 7 선고 2024나11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11. 7 선고 2024나1137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가합1247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원

담당변호사 최원영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변론 종결 2024. 9. 26.

판결 선고 2024. 11. 7.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가합1247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2016. 5. 10. 50,000,000원, 2016. 6. 24. 30,000,000원, 2016. 6. 29. 122,828,638원, 2016. 6. 30. 4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212,41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2,4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929,000원 및 2023. 10. 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2. 추가판단'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성격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이 사건 각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행위는 증여가 아니고 배우자인 C이 부부공동재산이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원래 피고의 몫인 그 매매대금 중 1/2을 분배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부부 각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830조). C이 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의 의미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원은 C의 책임재산이 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이 사건 금원 중 1/2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의미로서 위 금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금원 중 1/2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C이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원고가 L으로부터 대여금을 쉽게 회수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무렵 자신이 원고에게 채무가 있다고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C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무렵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금원지급행위로 인해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전주시 덕진구 Q 임야 57,650㎡에 관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기는 2010. 6. 1.인데, 2015. 9.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C은 그 무렵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다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판례에게 매도한 시기는 그로부터 약 7개월정도 경과한 시기로서, 위 강제경매취하 이후 위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 C이 L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권채무가 해소되었다는 통지를 받거나, C이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C은 L이 전주시 덕진구 Q 임야의 개발사업을 한다길래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채무자를 C으로 한 데에는 L이 신용불량자인 연유가 있다고 하는바 C 또한 위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한 L이 자력으로 대여금을 변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위 강제경매취하 이후 위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 위 개발사업의 진척이 뚜렷하여 L이 원고에 대한

나머지 채무를 모두 갚을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L의 경제적 능력에 변동이 있어 C로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권채무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리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원철

판사김경선

판사기획광